

방송영상진흥재원관리규정

제정 2010. 07. 13.
개정 2015. 02. 26.
개정 2015. 10. 01.
개정 2019. 12. 30.
개정 2020. 08. 11.
개정 2025. 03. 07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2조(방송영상진흥재원의 용도) 방송영상진흥재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경영지원자금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30.> <개정 2025.03.07.>

제3조(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책무)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을 공익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4조(방송영상진흥재원의 출연절차) ①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출연금을 입금하거나, 진흥원에 직접 납입하고 출연 증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 <개정 2020.8.11.>

② 제1항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5조(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·운용 등) ① 방송영상진흥재원은 원금의

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방송영상진흥재원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증식·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③ 방송영상진흥재원출연자가 사업목적을 특정하여 출연한 때에는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④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출·운용코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하여 시행한다.

⑤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6조(방송영상진흥재원운용계획의 수립) ① 진흥원은 다음 년도의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방송영상진흥재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한 방송재원운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③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7조(방송영상진흥재원의 원금 감소)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8조(회계담당자 등) ①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의 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제1항의 회계담당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 2 장 방송영상진흥사업의 지원

제9조(구성) ① 방송영상진흥재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.

1.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자 3인
2. 금융관련 전문가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영상진흥관련 전문가 중 4인(제 2호의 해당자 중 여성위원 최소 1인 포함) <개정 2019.12.30.> <개정 2020.8.11.>

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부원장 <개정 2019.12.30.>
2. 방송재원 담당 실(본부)장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9.12.30.>
3. <삭제 2019.12.30.>

제10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대출지원 사업의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위촉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 호선한다. <조항신설 2015.10.1.> <개정 2019.12.30.>

⑤ 위촉 위원들은 직무윤리를 사전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2.30.>

⑥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한다. <신설 2019.12.30.>

1. 심사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 사자 또는 관련기관 소속인 경우
2. 심사대상 사업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등을 수행한 경우
3. 위원 스스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 <신설 2019.12.30.>

⑦ 위원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 10조 ⑥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신설 2019.12.30.>

⑧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신설 2019.12.30.>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대출지원사업의 기본 방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출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평가
2. 지원대상사업자의 범위, 대출금액, 대출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출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

제12조(위원회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 다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

⑤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안건의 의결서 및 운영위원 승낙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,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단, 업체 신용정보 및 영업비밀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⑥ 위원회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12.30.>

⑦ 제12조 제5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. <조항신설 2020.8.11.>

1. 회의일시·장소
2. 참석자 명단
3.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업무지원)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케 한다. 간사는 진흥원장이 지정한다.

③ 위원에게는 수당·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대출지원계획의 수립) ① 진흥원은 제6조제2항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된 방송영상진흥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대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제1항의 대출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실적평가, 지원대상사업자의 범위, 지원대상프로그램의 분야, 사업자 및 분야별 대출한도, 대출조건, 신청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대출지원사업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15조(대출지원사업의 신청) ① 진흥원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대출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대출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1. 대출지원사업신청서
2. 사업계획서(사업명·목적·기간·내용·총 소요예산 및 지원요청액 등)
3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16조(대출지원사업의 결정·통보) ① 위원회는 대출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1. 대출지원사업자
2. 사업자별 대출금액, 대출기간

② 위원회는 대출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대출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

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진흥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원대상 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대출기간) 대출지원사업의 대출기간은 대출금의 지급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원사업자의 의무 등) ① 대출지원이 결정된 사업자는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를 명백히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, 신청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11.>

1. 상기 위반 사항 발생 시 대출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 즉시 회수
2. 1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신규 융자 제한
3. 2회 적발 시 대출원리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융자 제한
4. 그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사항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. <조항 신설 2020.8.11.>

④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법령 및 규정 등 위반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조항 신설 2020.8.11.>

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대출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조항 이동 2020.8.11.>

제19조(대출지원사업의 평가) 진흥원은 매년 대출지원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보 칙

제20조(방송영상진흥원결산) ① 진흥원은 회계년도마다 방송영상진흥원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② 제1항의 보고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장부의 비치) 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원관리장부를 비치하여 방송영상진흥원의 관리 운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,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22조(위임 규정)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부 칙(2010.7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2.2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0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8.1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3.07.)

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